

수원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나65835 판결 [계약금반환 청구]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나65835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3. 31 선고 2020가단533156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성식

피고, 항소인1. B

2. C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형진, 정지태

변론 종결2022. 9. 15.

판결 선고2022. 10. 27.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2021. 3. 31. 선고 2020가단533156 판결

주 문

1. 이 사건 소송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부분은 2022. 3. 14.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확정으로 종료되었다.
2.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3.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소송종료선언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본다.

가. 민사조정법 제7조 제1항, 제2항, 제30조, 제34조 제1항, 제4항에 의하면, 조정담당판사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 당사자에게 송달을 하게 되면, 당사자는 그 결정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2021머74218호로 조정에 회부되어 위 조정절차에서 2022. 3. 14. 「1. 피고 B은 피고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7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가. 피고 C은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방법은 원고가 가압류한 피고 C의 급여채권을 집행하는 방법에 의하며, 피고 C은 위 집행절차에 최대한 협조한다. 나. 피고 C은 추가로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되, 위 나.항 기재 금원에 대한 집행이 완료되어 피고 C의 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 집행이 해제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부터 매월 말일에 3,000,000원씩을 총 10회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만약 피고 C이 위 분할금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할 경우 즉시 분할 및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피고 C은 원고에게 57,000,000원(기지급한 금원은 공제) 및 이에 대한 위 기한의 이익 상실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진 사실, 위 결정정본이 원고에게 2022. 3. 25., 피고 B에게 2022. 3. 22., 피고 C에게 2022. 3. 26. 각 송달되었는데, 피고 C만이 2022. 3. 29.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원고와 피고 B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소송목적이 피고들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므로,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부분은 위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그 이후에도 이 사건 소송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 부분에 대한 심리를 계속 진행하였으므로, 그 부분의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9. 5. 11.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D휴게소 하행선 E커피숍의 사업자로 입점하는 계약을 성사시키는 업무의 대행을 피고 B에게 위임하고, 피고 B은 2019. 12. 1.까지 위 입점계약을 성사시키기로 하는 업무대행계약의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였고, 2019. 7. 11. 위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는 피고 B에게 계약관련비용으로 1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40,000,000원은 2019. 7. 11.에, 중도금 40,000,000원은 2019. 8. 4.에, 잔금 50,000,000원은 입점계약완료일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 B의 귀책사유로 2019. 12. 1.까지 원고의 점포입점계약이 불발되었을 경우 기지급된 계약금 및

중도금을 피고 B이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에 관하여 피고 B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2019. 7. 2. 피고 B의 소개로 당시 F 주식회사(위 D휴게소를 운영하는 회사. 이하 F이라 함) 직원 이자 G휴게소 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피고 C을 만났는데, 피고 C은, '원고의 위 D휴게소 입점계약이 2019. 12. 1.까지 체결되도록 하겠으며, 불이행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1호증)(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피고 B에게 2019. 7. 12. 40,000,000원, 2019. 8. 7. 37,000,000원, 합계 77,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4) 그후 원고는 위 D휴게소 입점계약의 성사를 기다리고 있던 중 2019. 11. '위 커피숍은 휴게소 운영업체인 F이 직영하기로 결정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피고 B은 2020. 1.말까지도 위 입점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하였다. 피고 B은 원고가 2020. 1.말경 입점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하였으니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고 하며 지급한 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반환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원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휴게소 입점계약이 불발되어 피고 B은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 B은 그 원상회복으로 또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배상하여야 하며, 피고 C은 2019. 12. 1.까지 계약체결 불이행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피고 B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것이므로,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특히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 확인서에 원고의 D휴게소 입점계약이 2019. 12. 1.까지 체결되도록 하겠으며, 불이행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증인 피고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C이, 피고 B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내지 원상회복의무까지 함께 부담한다거나 이를 보증하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이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확인서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 C으로, 이는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약정이라 할 것인데, 이 법원의 원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확인서 작성 당시 피고 C에게 이 사건 계약서 초본을 보여주지 아니하였고, 비용이 든다는 대략적인 말 외에 원고가 피고 C에게 지급할 계약금 및 중도금에 관한 사항은 말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C이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 B이 원고에게 대행비용을 받는다는 사정이나 이 사건 계약의 손해배상 조항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 피고 C이 이 사건 금원 반환을 책임질 의사였다면 이 사건 확인서에 그 채무를 명시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확인서 기재만으로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책임 계약에서 제3자인 피고 B의 계약상 책임까지 모두 책임진다는 의사까지 추단된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이 사건 확인서에 피고 B은 참고인으로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달리 피고 C이 피고 B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을 하겠다는 내용이나 연대보증 의사를 추단할 만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③ 피고 C이 피고 B과 이 사건 금원 중 일부를 나누기로 하였다거나 피고 B에게 수수료 등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 피고 C이 이 사건 금원을 함께 부담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④ 이 사건 확인서상 약정은 2019. 12. 1.까지 원고의 D휴게소 입점계약이 성사되지 아니하면 피고 C이 책임지겠다는 것으로, 원고와 피고 B이 입점제안서 등을 제출하고 입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할 것인데, 피고 C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도 아니어서 원고에게 입점제안서를 제출하게 할 의무가 없음에도 원고나 피고 B이 입점제안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성사될 수도 없었던 입점계약에 대하여까지 무조건적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2022. 3. 14.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확정으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C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효진

판사이국현

판사김광진